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1
----------	-------

제출년월일 : 2022. 0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우리구에서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해 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충전자의 영업소 및 저장소로 규정
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안 별표)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조문 삭제(안 제1조, 제2조 및 안 별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1. 27. ~ 2. 1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6)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02.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하“가스사업 등”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자의 영업소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제3조 중 “허가요건”을 “허가기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공통사항)

- 가.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배치기준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2.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층 보호시설 내에 설치 불가
나. 용기보관실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로 하며,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한 면의 폭이 2.3m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한 면이 용기보관실 출입구와 접할 것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5.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가. 시설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연성,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독성가스가 아닐 것.(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4조제2항 및 「<u>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u>」 제3조제5항에 따라 <u>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가스사업 등</u>”이란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3조, 「<u>고압가스 안전관리법</u>」 제4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u></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액화석유가스사업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u> -----.</p> <p>제2조(정의) ① ----- “<u>액화석유가스사업 등</u>” (이하 “<u>가스사업 등</u>”이라 한다)이란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 -----.</p> <p>② <u>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u> 2. <u>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u> 3. <u>액화석유가스 충전자의 영업소</u> 4. <u>액화석유가스 저장소</u>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 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공통사항)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 할 것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허가기준-----

----- .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공통사항)

- 가.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배치기준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2.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층 보호시설 내에 설치 불가
나. 용기보관실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로 하며 ,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한 면의 폭이 23m 이상)의 부지를 확보 하여야 하며, 주차장 한 면이 용기보관실 출입구와 접할 것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다. 사무실	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

[별표 2]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공통사항)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고압가스 판매소

시설기준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마. 안전거리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시설기준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5.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가. 시설기준	
	1. 가연성,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독성가스가 아닐 것. (공공의 상·하수도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별표 2] 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도시환경국 환경과 이선미 (☎3153-9285)